성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개정된「지방자치법」제105조('22.1.13. 시행)에서 인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(안 제1조)
나.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(안 제2조 ~ 제3조)
다. 회의(제4조)
라. 위원회의 직원,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(안 제5조 ~ 제6조)
마. 수당 및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(안 제7조 ~ 제8조)
바. 운영세칙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제105조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[미래전략담당관-3817(2021.11.18.)]
○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개선사항없음 [가족지원과-48281(2021.11.18.)]
○ 입법예고 : 해당없음(2021. 11. 22. ~ 12. 12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주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,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당선인의 군수직 인수를 원활히 시행하여 군정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